[미국]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할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함

김지영 *

□ 배경

○ 원고인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Olivia de Havilland, 이하 '원고')는「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투 이지 치즈 오운(1946)」,「상속녀(1949)」등에 출연한 영화배우로 두 차례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

○ 피고인 FX(이하 '피고')는 미국의 케이블과 위성 텔레비전 채널 방송국으로 2017년 3월 8개의 파트로 구성된 다큐드라마인 Feud: Bette and Joan(이하 '해당 작품')을 방송하였다.

□ 소송 주요 내용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344조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코먼로(Common Law) 상의 그녀의 이름, 정체성 또는 이미지를 도용(appropriation)한 혐의로 소를 제기하였다.

○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 법률에서 말하는 인물의 이름을 사용 또는 제품, 상품에 '생김새'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이 사건 법원은 Sarver판결[1] 을 인용하며, 해당 사건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권리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러한 결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 또한 Zeta-Jones가 원고를 연기하면서 'bitch'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한 것이 모욕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작품에서 원고를 묘사한 것이 무척 공격적인 것은 아니며, 혹여 그렇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하여 실제적인 악의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Comedy III판결[2] 을 인용하며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마찬가지로 불쾌한 묘사를 검열함으로써 유명인의 이미지를 통제 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내렸다.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1) Sarver v. Chartier, 813 F. 3d 891, Court of Appeals, 9th Circuit, 2016

2) COMEDY III PRODUCTIONS, INC. v. GARY SADERUP, INC., 25 Cal. 4th 387 (2001)

□ 향후 전망

○ 원고의 변호사는 이미 상고를 제기한 상황으로 향후 판결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영화감독들과 영화제작사는 본 판결에 대하여 환영하고 있으며, MPAA는 성명서를 통하여 “영화제작사 그리고 창작자들에게는 중요한 판결이며 실제 사람들과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스토리로 제작되는 장르인 다큐드라마, 전기영화, 역사소설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판결이라고 하였다.

□ 참고 자료

* https://bit.ly/2IT2dlg

* https://bit.ly/2ISMJ7h